

4.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
제51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
 3.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 제52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竝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9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竝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竝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關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竝형자동차(이하 “竝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竝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십시오.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0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